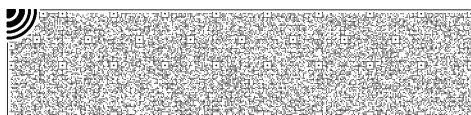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139호

의 안 명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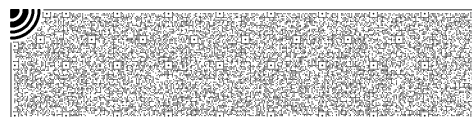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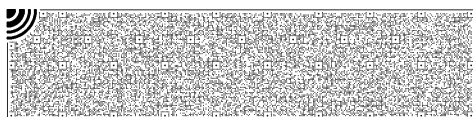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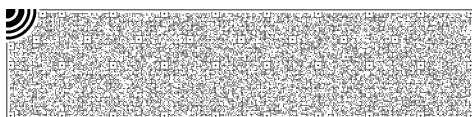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4. 20.

주 문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각 광역지방 자치단체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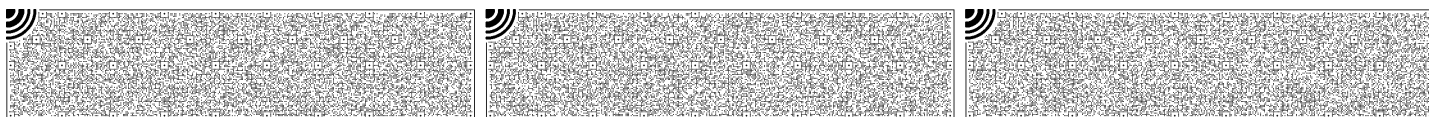
<별 지>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202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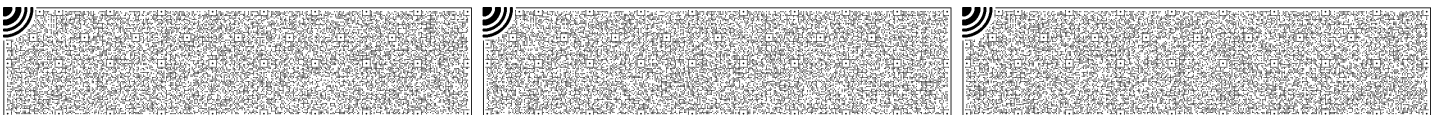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7
②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범위 확대	12
IV. 조치사항	18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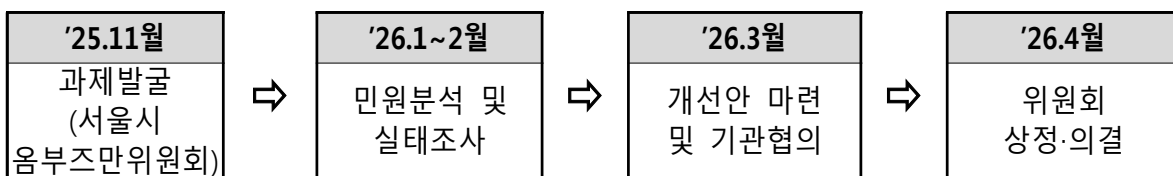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 추진배경

- 최근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3월 도심에서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의 경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점차 대형화 추세
- 지방정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속한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각 지방정부는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배상 및 보험 체계*로는 다수의 사망자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
 -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지반침하'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영조물배상보험) 사망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 원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대규모 사망자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은 현저히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 이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대비하여 배상 및 보험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도개선 건의사항

□ 추진경과



II.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 일반 현황

○ (발생건수) 최근 5년('21 ~ '25년) 동안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총 754건으로 연 평균 151건 발생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반침하'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2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 아래 표 참조)

○ (발생원인)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46%), 다짐·퇴메우기 불량(15%), 굴착공사 부실(1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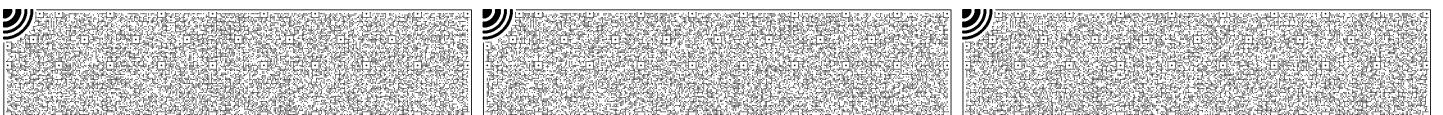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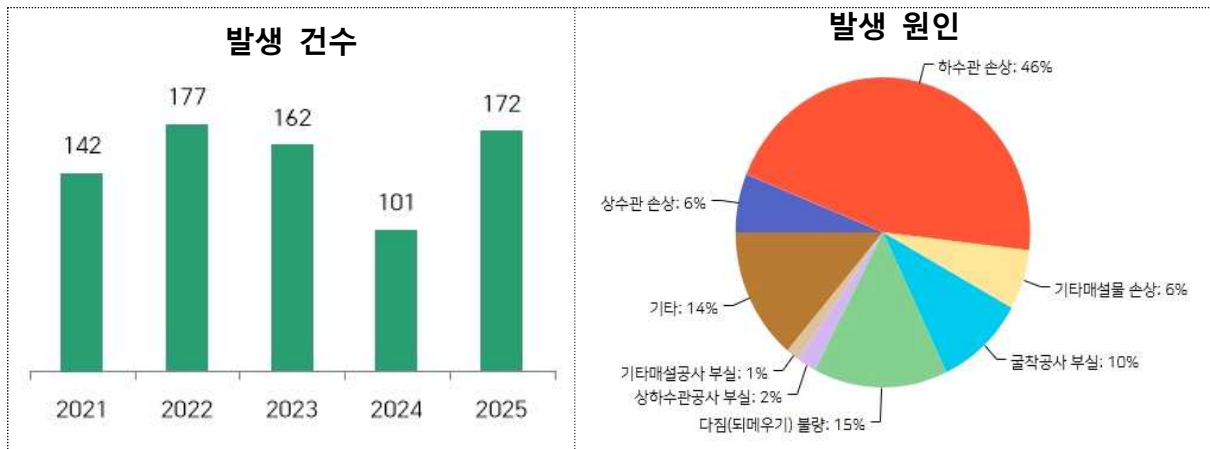
- 하수관의 노후화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지반침하 사고는 더욱 확대, 대형화될 것으로 보임

언론보도 땅꺼짐 사고 절반은 '하수관 손상' ... 정비 시급 (KBS, '26. 4. 16)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은 30년 이상되었거나,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실정 ... 최근 땅꺼짐이 이어진 서울 시내에서도 총연장 1만km의 하수관로 절반 이상이 30년을 넘겼고, 심지어 50년이 넘은 구간도 3천여 km에 달함

《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발생 현황 》

(출처: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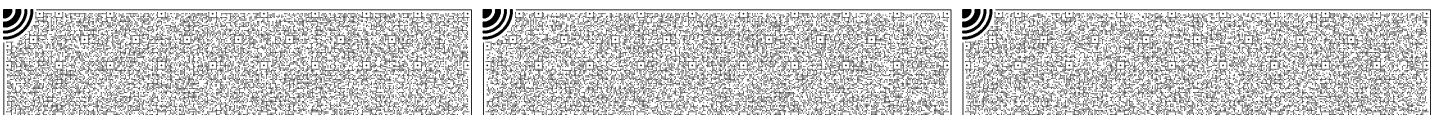
○ (발생지역) 경기(19.9%), 서울(14.9%), 부산·전북(각 9.8%), 광주(9.2%) 순

[출처: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서비스, 기간: '21년 ~ '25년]

순위	지역	건수	비율	순위	지역	건수	비율
1	경기	150	19.9%	10	충북	28	3.7%
2	서울	112	14.9%	11	경남	26	3.4%
3	부산	74	9.8%	12	인천	21	2.8%
	전북	74	9.8%		전남	21	2.8%
5	광주	69	9.2%	14	대구	13	1.7%
6	경북	42	5.6%	15	울산	10	1.3%
7	강원	40	5.3%	16	제주	8	1.1%
8	대전	32	4.2%	17	세종	4	0.5%
9	충남	30	4.0%	합계		754	100%

참고 대형 지반침하 발생 주요 사례

발생	내용	
'25.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지반침하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지반침하(크기 360m², 깊이 20m)로 도로 한복판에 발생하여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져 사망 ○ 1명 사망, 1명 경상 	
'24.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심 지반침하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지반침하(4m×6m×2.5m)로 차량이 빠지면서 운전자·동승자 부상 ○ 1명 사망, 1명 중상 	
'22.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양양군 편의점 붕괴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 인근 지반 침하(12m×8m×5m) 발생으로 해당 건물 1/3 붕괴 ○ 인명피해 없음 	
'19.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여의도 도로 지반침하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지하 공공보도 공사 중 지반침하(5m×4m×4m)로 작업자 매몰. 노후상수관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이 원인 ○ 1명 사망 	



□ 시민안전보험

-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 지방정부별로 자율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시·도민' 안전보험과 기초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시·군·구민' 안전보험이 있음(전체는 이하 '시민안전보험'으로 통칭)

< 관련 규정 >

■ 재난안전법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운영)** 각 지방정부는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해당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시민의 보험청구 시 각 보장항목과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광역지방정부가 관할 시·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운영하는 경우*(서울, 부산, 충북 등)와 광역 단위의 보험 없이 각 기초지방정부가 개별 가입·운영하는 경우(울산, 경기, 강원 등)가 있음
 - * 각 기초지방정부가 별도의 시·군·구민 안전보험을 통해 광역지방정부의 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보장하거나(예: 개물림 사고,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등), 동일 내용(대중교통 사고 등)을 중복 보장하는 경우 등 가입 형태 다양
- **(가입현황)** 전체 기초지방정부의 90.3%, 광역지방정부의 과반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최소 1개 이상*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의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에 해당
 - * 시·도민안전보험과 시·군·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같을 경우 중복보상 가능



《 '2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개(기관), '26.1.31. 기준]

광역 (가입률 53%)				기초 (가입률 90.3%)			
시·도민 안전보험	계	가입	미가입	시·군·구민 안전보험	계	가입	미가입
	17	9	8		226	204	22

《 시민안전보험 보상 절차도 》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 (보상범위)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애 등으로 구성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 등

- 서울특별시의 경우 금년부터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항목의 보장 내용으로 '지반침하'를 명시하고, 보장금액도 확대(사망 2,000 → 2,500만원)

※ (붙임1) 2026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내용 참고

□ 영조물배상보험

- (개요) 지방정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정부가 설정·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의 약관상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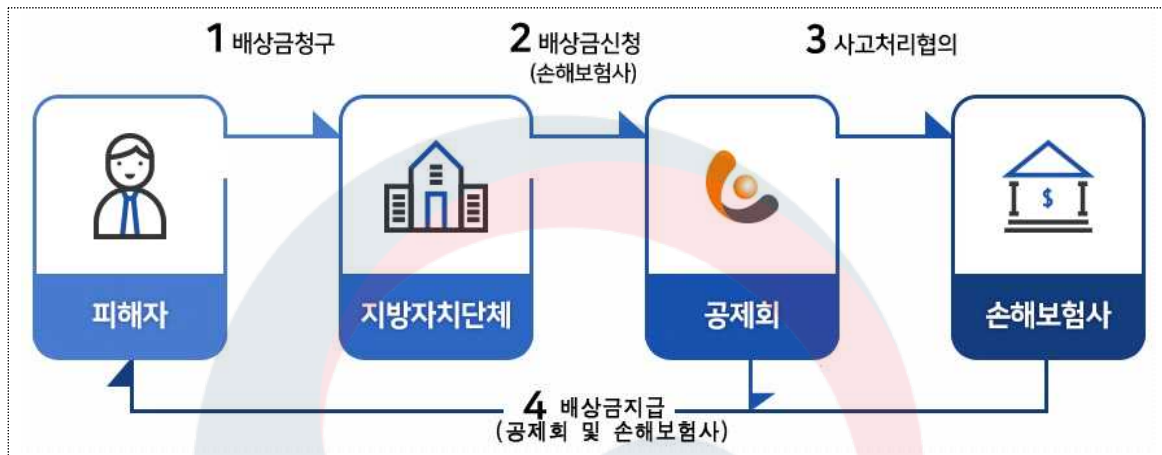


- **(운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지방정부의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운영

※ 공제회는 지방정부를 대리하여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권리·의무 당사자는 지방정부와 보험사), 공제회비 징수, 그 밖의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영조물배상보험 배상 절차도 》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범위)** 공제회는 ‘손해배상 공제사업 규칙’을 통해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청사, 도로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보통약관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가공제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배상

※ 예) ‘도로에 기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의 경우 보통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별로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1사고당/연간 한도 내에서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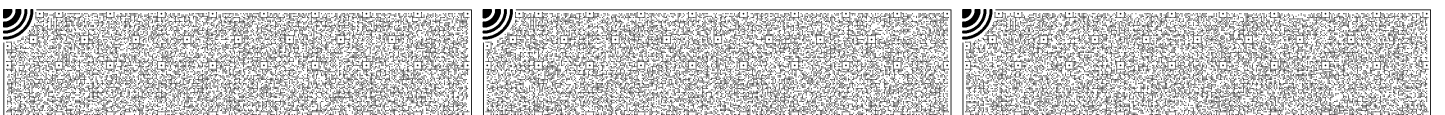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현 황

- **(지반침하 보장여부)** 각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보장 항목을 매년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등을 모집하여 선정·운영하고 있는데,
 - '26년도 전국 시민안전보험 중 약관상 지반침하 사망자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시·군·구는 전국 약 64%(146개) 지역 해당
 - ※ 광역지방정부에서 '지반침하 사망' 항목을 보장한 경우 소속 시·군·구 모두 포함하고, 광역지방정부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초지방정부에서 보장하는 지역만 합산할 경우 전국 228개 지역(기초 226개 + 세종·제주) 중 146개 해당
 - ※ 지반침하 사망에 대한 지방정부별 보상 유형, 금액 등 세부사항은 [붙임2 참고](#)
- **(지반침하 보장 유형)** 각 지방정부는 크게 아래 3가지 형태로 보장 항목을 설정하여 보험사 등과 계약·운영
 - **(지반침하 명시)** 별도의 보장항목으로 ① '지반침하'를 신설하거나 ② 기존 '붕괴* 등' 보장항목에 '지반침하'를 포함하여 명시한 지방정부는 광역 2개 기관(11.7%), 기초 26개 기관(11.5%)
 - * 약관 상 기존 보장항목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중 '붕괴'는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에 한정되어, 도로 위에 발생한 지반침하 등은 원칙적으로 미해당
 - **(사회재난 해석)** '지반침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사망을 약관상 보장하는 ③ '사회재난'으로 해석하여 보상하는 지방정부는 광역 5개 기관(29.4%), 기초 66개 기관(29.2%)



※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게 보고한 경우 등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여 보상

참고 지반침하 사망 시 시민안전보험 보상 가능 유형별 구분

- ① ‘지반침하 사망’ 별도 보장항목 신설
 - ※ 서울 동대문구, 서울 마포구, 부산시, 경남 고성군 등
- ② 종전 사망 보장항목인 ‘폭발, 화재, 붕괴 등’에 ‘지반침하 포함’ 등 추가 명시
 - ※ 서울시,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등
- ③ 종전 사망 보장항목인 ‘사회재난’에 지반침하 사망이 포함되는 것으로 약관 해석
 - ※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 중구, 세종시 등

○ (보장금액) 지반침하 사망 사고에 대하여 보장금액으로 설정한 평균 금액은 광역지방정부 1,500만 원*, 기초지방정부 약 1,800만 원**

※ '26년 시민안전보험 기준, 지반침하 미보장 지방정부는 평균에서 제외

* [광역] 최저 1,000만 원(세종·제주) ~ 최고 2,500만 원(서울)

** [기초] 최저 500만 원(경기 의왕) ~ 최고 5,000만 원(전북 무주, 경북 영양·봉화)

< 관련 규정 >

■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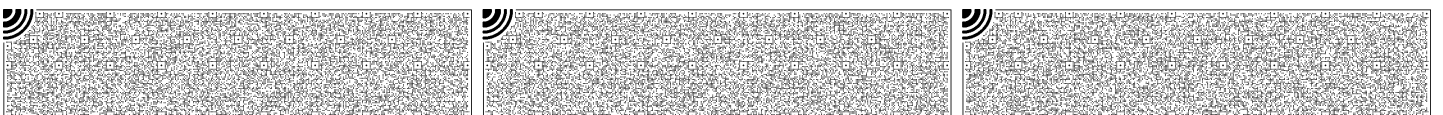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문 제 점

-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 전국 약 64%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지반침하 사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 여전히 전국 82개 시·군·구 지역(약 36% 해당) 주민은 지반침하 사망 사고에 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
 - ※ 지반침하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유가족은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국가 배상 신청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

《 지반침하 사망 보장 시·군·구 지역 현황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26년도 시민안전보험 기준]

구분	보장되는 시·군·구*		보장 주체	구분	보장되는 시·군·구*		보장 주체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서울	25	100%	광역	강원	11	61.1%	기초
부산	16	100%	광역	충북	11	100%	기초
대구	0	0%	미보장	충남	8	53.3%	기초
인천	10	100%	광역	전북	14	100%	기초
광주	5	100%	광역	전남	6	27.3%	기초
대전	5	100%	광역	경북	12	54.5%	기초
울산	4	80%	기초	경남	5	27.8%	기초
세종	1	100%	광역	제주	1	100%	광역
경기	12	38%	기초	전체	146	64%	-

* 광역지방정부에서 지반침하 사망을 보장할 경우, 소속 각 기초지방정부의 개별 보장 여부와 무관하게 소관 기초지방정부 기관 수를 모두 보장지역으로 산정

※ 음영 표시된 지역은 해당 지역 전부 지반침하 사망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 적색 표시지역은 해당 지역내 지방정부의 지반침하 사망 사고 보장 50% 미만



민원사례  **싱크홀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전용보험제도 설립 요청**

싱크홀 사고가 '일반 사고'로 분류됨에 따라서 싱크홀 피해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사회재난 피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싱크홀 사고 당사자가 사고 직후의 혼란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5. 6. 5.)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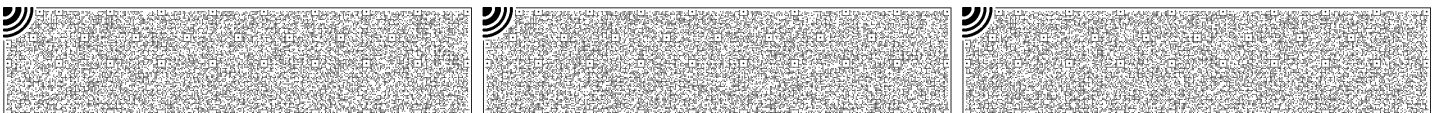
- **(보장항목 추가·신설)** 동일 광역 생활권역임에도 소속 기초지방정부 주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의 형평성,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에 따른 경제성, 지역 내 지반침하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 광역 단위 시·도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사망' 또는 '지반침하 사망' 보장항목 추가·신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발생 시 보상범위에 포함
- ※ (조치대상기관) 현재 시·도민안전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가입하였더라도 지반침하 사망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10개 광역지방정부(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예시)** 시·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개정(안) 》

개정유형	현 행			개정안			
종전 보장항목에 명시적으로 추가	□ 2026년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내용			□ 2027년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 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 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 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 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 침하 상해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 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상해 사 망한 경우	2,500 만원
		후 유 장 해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후 유 장 해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 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유형	현행			개정안			
보장항목 신설	□ 2026년 도민안전보험 세부 보장내용			□ 2027년 도민안전보험 세부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 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 금액	
	자연 재해	진단 위로금	○○도민이 자연 재해로 의료기관 에서 4주 이상 진단시	150 만원 한도	자연재해	(좌동)	(좌동)
		입원 위로금	○○도민이 자연 재해로 1일 이상 상해입원시	1일당 5만원			
		상해 치료비	○○도민이 자연 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200 만원 한도			
			사회재난	○○도민이 사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500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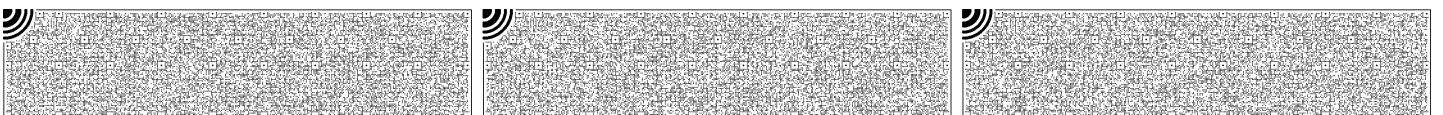
⇒ 광역지방정부 '시·도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으로 '지반침하' 사고 또는 '사회재난' 등 반영



2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범위 확대

현 황

- 현행 영조물배상보험의 배상 체계는 지방정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 **지반침하의 장소 및 원인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 ※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 원인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면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영조물배상보험은 피해의 원인이 된 시설이 영조물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 유무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배상
- 지반침하는 도로 위에서 많이 발생*하나, 영조물배상보험의 보통 약관에는 '도로에 기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 구체적인 통계는 부재하나,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문제가 지반침하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관이 공적 공간인 도로 지하에 많이 매설되어 있는 점,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를 통한 사고지점 검색결과 등 고려
- 이에 각 지방정부는 추가공제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로담보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도로에 기인한 피해를 보상
- 17개 광역지방정부(기초 포함*)의 도로담보 특별약관 중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평균* 1,100 ~ 7,000만 원 수준이며, 연간 총 보상한도액 평균*은 2,200 ~ 1억 5,400만 원 수준
 - * 해당 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보상한도액 평균금액



《 도로담보 특별약관 지방정부별 평균 보상한도액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만 원]

순위	광역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	연간 총 보상한도액	순위	광역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	연간 총 보상한도액
1	서울	7,000	15,400	10	전북	3,100	6,900
2	경남	5,800	13,000	11	경북	2,900	6,600
3	부산	5,800	12,400	12	전남	2,500	5,300
4	강원	5,500	12,000	13	인천	2,400	5,000
5	세종	5,400	11,500	14	대구	1,900	4,500
6	대전	5,400	10,800	15	경기	1,700	4,000
7	충남	4,800	9,600	16	제주	1,400	2,900
8	울산	4,400	9,400	17	충북	1,100	2,200
9	광주	4,100	8,400	-	-	-	-

※ 해당 지역 광역 + 기초 지방정부의 보상한도액 평균금액

< 관련 규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 손해배상 공제사업 규칙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칙)

제13조(약관) ① 공제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회원 및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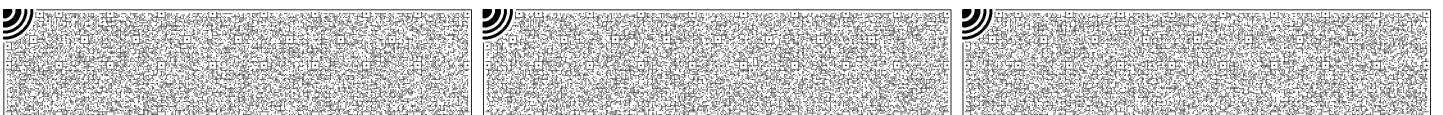
- 영조물배상공제약관 [별첨 1]

■ 영조물배상공제약관

I.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규칙 제13조 관련)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도로에 기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II. 영조물배상공제 특별약관(제13조제2항 관련)

① 도로담보 특별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도로에 기인하여 발생한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문 제 점

- 현재 지반침하와 관련된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부존재하여, 도로 등 사고 장소·위치와 관련된 타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 각 지방정부가 개별 가입하고 있는 ‘도로담보 특별약관’은 사고당 한도 최대 1억 원(연간총보상 한도 3억 원)에 그쳐, 다수의 사망자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은 인원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는 구조

언론 보도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에 보상 추진(경향신문, ‘26.1.)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한다는 얘기다..** (생략)

- 한편, 보통약관과 일부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로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에는 **대물/대인 구분이 없어,**
 - 현행 보상한도액으로 대물 피해까지 배상할 경우 사망피해자 1인당 배상액은 더욱 감소
- ※ 도로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설정할 수 있으나, 공제회 및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도로 사고에 대해 배상 부담이 높아, 보상한도액 증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 약관상 대인 / 대물 보상 구분 사례 비교 》

[※ 약관 (별지 제1호서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① 대인 / 대물 보상 미구분 사례

■ 도로담보 특별약관

□ 도로시설

구분	단위	보상한도액(1사고당/연간총보상)	자기부담금	비고
도로	특별시/광역시도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노선별 세부 내역 첨부필요 ※ 노선명 ※ 시점 ※ 종점 ※ 길이
	지방도 (농어촌도)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시/군/구도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② 대인 / 대물 보상 구분 사례

■ 보통약관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시설구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최소500만원	*최소500만원	*최소200만원	*최소10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 가스사고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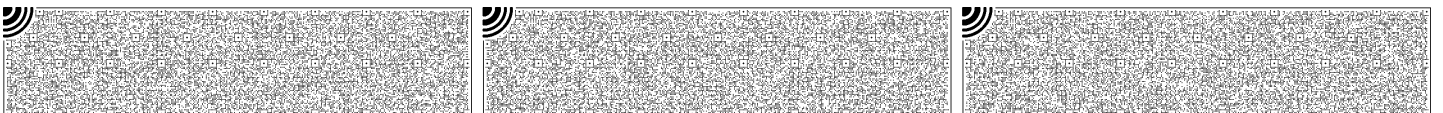
구분	단위	보상한도			비고
		대인	대물		
액화석유 가스 (LPG)	휴게실 □ 면적 m ²	8천만원 □ 1억원 □	1억원 □ 1.5억원 □	10억원 □ 2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음식점, 주점 □ 면적 m ²	1.5억원 □ 2억원 □	2억원 □ 3억원 □	30억원 □ 40억원 □
	일반공장(난방) □ 시설용량 톤		2.5억원 □ 3억원 □	5억원 □	50억원 □

■ 드론 배상책임 특별약관

□ 드론

업종	단위(무게)	기체 신고번호	기체 시리얼번호	용도		
드론	kg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대인/대물	1인당	만원	1사고당	만원	만원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각 적용
특별담보	<input type="checkbox"/> 운송위험 확장 추가특별약관 <input type="checkbox"/> 대여업 확장 추가특별약관 <input type="checkbox"/> 군집드론 확장 추가특별약관					

※ 무게가 150kg이 초과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선방안

○ (별도 특약 신설) 현재 지반침하와 관련된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없는 관계로, 도로 등 사고 장소·위치와 관련된 타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지반침하 사고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적합한 보상액, 부담금 등 기준 마련하고 각 지방정부에 제시

※ 공제회는 신설한 지반침하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설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를 모집하고 각 지방정부에 해당 특약을 제시

《 (예시) 지반침하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안) 》

신설(안)

00. 지반침하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 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지반침하사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로서, ‘손해배상 공제사업 규칙’ 제5조에 따른 공제등록 대상에서 발생한 사고

: : :

(별지 제1호서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지반침하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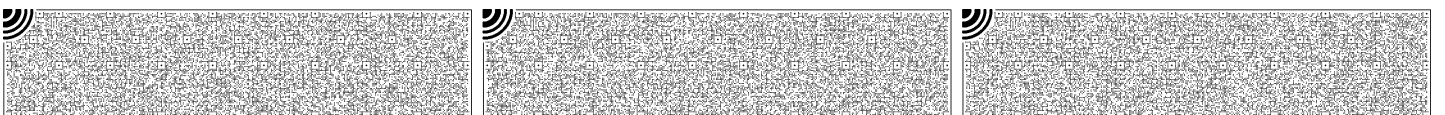
구분	단위	보상한도		비고	
		대인	대물		
지반침하	도로	km	2억원 <input type="checkbox"/>	2억원 <input type="checkbox"/>	
			1.5억원 <input type="checkbox"/>	1.5억원 <input type="checkbox"/>	
			1억원 <input type="checkbox"/>	1억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기존 약관 보완)** 지반침하로 인한 다수 사망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도로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한도액을 증액**하고, **대물 보상과 대인 보상을 각각 분리**하여 보상

※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 또는 손해보험사의 계약 기피 등 지반침하에 대한 별도 특약 신설이 어렵다면, 현행 도로담보 특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 ① **'지반침하사고 특별약관' 신설** 또는 ② **현행 도로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한도액 증액 및 대인/대물 분리 보상**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각 광역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p>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으로 '지반침하' 사고 또는 '사회재난' 반영 ※ 시·도민안전보험에 미가입한 광역지방정부는 별도 가입 필요 	<p>각 광역지방정부</p>
<p>② 영조물 배상보험 보장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침하사고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지반침하 특별약관' 별도 신설 ○ 도로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한도액을 증액하고, 대물 보상과 대인 보상을 각각 분리하여 보장 ☞ ① '지반침하사고 특별약관' 신설 또는 ② 현행 도로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대물/대인 분리 보장 	<p>한국지방재정 공제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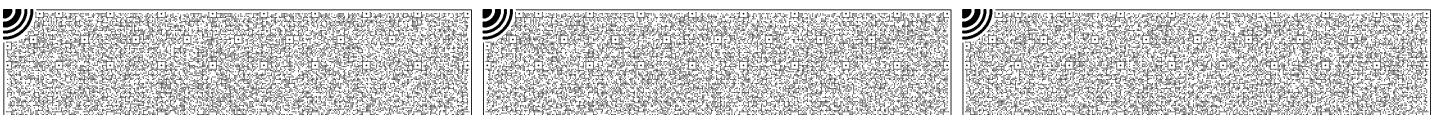
□ 조치기한 : 2027. 4월



붙임1 **2026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내용**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 재해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후유 장해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 재난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후유 장해	서울특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만원
	후유 장해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대중 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후유 장해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서울특별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서울특별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14급)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붙임2

2026년 전국 시민안전보험 지반침하 사망 보장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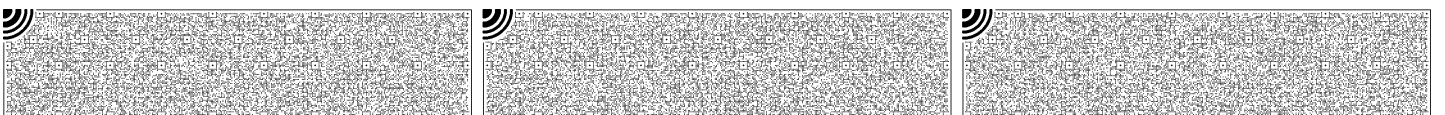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만 원]

광역	기초	보장금액	유형**	광역	기초	보장금액	유형**	
서울*	전 지역	2,500	②	충남	공주	1,500	②	
부산*	전 지역	1,000	①		보령	1,500	③	
인천	전 지역	2,000	③		아산	1,000	③	
광주*	전 지역	1,000	③		당진	2,000	③	
대전	전 지역	2,000	③		서천	1,000	③	
울산	중구	1,000	③		청양	1,200	③	
	남구	2,000	①	태안	2,000	③		
	동구	2,000	③	전주	3,000	②		
	북구	2,000	③	군산	1,500	③		
세종	-	1,000	③	익산	1,500	③		
경기	의정부	1,500	③	전북	정읍	2,000	③	
	안양	1,000	③		남원	2,500	③	
	부천	2,000	③		김제	2,000	③	
	광명	1,000	③		완주	2,000	③	
	동두천	1,000	③		진안	3,000	②	
	안산	1,500	③		무주	5,000	②	
	의왕	500	③		장수	2,000	③	
	하남	2,000	②		임실	2,000	③	
	용인	2,000	③		순창	2,500	③	
	김포	1,000	③		고창	3,000	②	
	화성	2,000	②		부안	3,000	②	
	여주	2,000	③		전남	보성	3,000	②
강원	춘천	2,000	③	화순		2,000	③	
	동해	1,000	③	무안		2,000	③	
	태백	2,000	③	영광		2,000	③	
	속초	2,000	③	장성		2,000	②	
	삼척	1,000	③	완도		2,000	③	
	홍천	1,000	③	경북		영주	2,000	③
	정선	3,000	②			영천	2,000	③
	화천	2,000	②			상주	2,000	②
	인제	2,000	②			청송	2,000	③
	고성	2,000	②			영양	5,000	②
	양양	1,000	③			영덕	2,000	③
	충북	충주	1,000		③	청도	2,000	②
제천		2,000	③		고령	2,000	②	
청주		1,000	③		칠곡	1,000	③	
보은		2,000	③		봉화	5,000	②	
옥천		2,000	③		울진	2,000	③	
영동		1,000	③		울릉	2,000	②	
진천		2,000	③	경남	창원	2,000	③	
괴산		2,000	③		양산	2,000	③	
음성		2,000	③		의령	2,000	②	
단양		1,000	③		고성	2,000	①	
증평		1,000	③		남해	2,000	③	
충남		천안	1,000		③	제주	-	1,000

* 해당 광역지방정부의 일부 자치구의 경우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중복보장

** (유형) ① 별도 보장항목으로 신설 / ② 종전 항목(붕괴 등)에 포함·추가 / ③ 사회재난으로 간주

※ 기타 상해 사망 항목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



붙임 3

관련 법령 등

◎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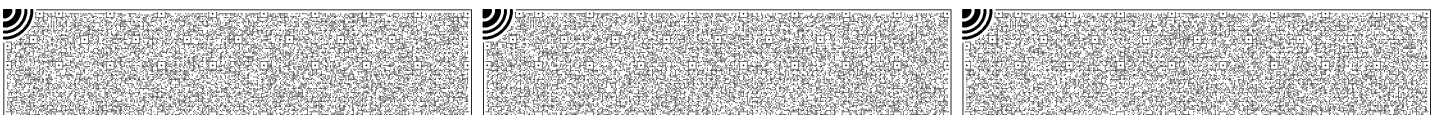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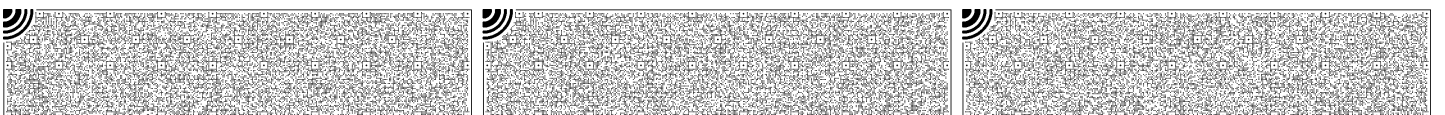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삭제 <2017. 1. 6.>
- ④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통제나 다른 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10. 1.>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더. 국토교통부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 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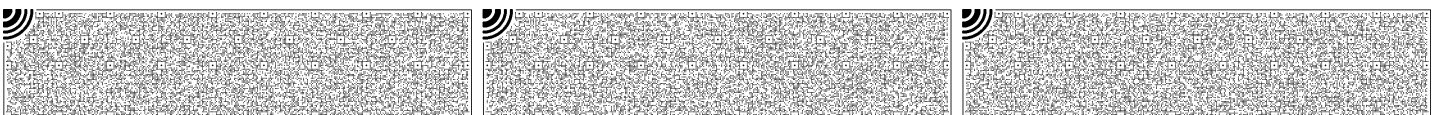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관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조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4월 20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최 진 영

위원 권 석 원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흥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올

위원 신 상 욱



정본입니다.

2026. 4. 20.

국 민 권 의 위 원

